



제 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 모집·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금지 〉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22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인 모집·채용 시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 차별 금지 (안 제10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0.

다.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60대에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술인의 국가기관등의 채용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예술 활동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예술인 모집·채용 시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 차별 금지

(안 제10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예술인의 연령차별 금지)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 제8조는 예술인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

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예술지원사업”²⁾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는 바, 예술인이 국가기관등에 의해 모집·채용될 경우에는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최근 공립 예술단체의 전문지휘자 응모 자격요건에 연령 제한을 포함시켜 고령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례가 상당 수 있는데³⁾,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예술단체의 지휘자 등의 경우 5~60대의 고령에 이르러 음악적 완성도를

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전국 전문 합창단 61개 중 예술감독 및 지휘자 채용 연령 제한이 있는 단체는 10개임.
(‘예술단체 연령차별 철폐 공청회’ 자료 참조, 최수진의원실 개최, 2024.8.27)

인정받게 된다는 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현재 주요 국립 예술단체⁴⁾의 경우 전문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채용 시 연령 제한이나 정년이 없으나, 일부 공립 예술단체⁵⁾의 경우 전문지휘자 및 예술감독 채용 시 연령제한 또는 정년이 있는 경우가 있음.

○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있으나,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을 통해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및 제4조의5⁶⁾에 따르면 직무의 성

-
- 4)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극단, 국립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5) 한국시립합창단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전문합창단 중 지휘자의 채용 연령제한이 있는 단체는 10개, 지휘자의 정년이 있는 단체는 8개임(자료 출처: ‘예술단체 연령차별 철폐 공청회’ 자료 참조, 최수진의원실 개최, 2024.8.27.).
-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근로 계약에 의해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 특정 경우에 해당
하지 않고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에 있어
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예술인을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
으로,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령의 예술 전문가들의 국공
립 예술단체 진입을 장려하고 예술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단체의 연령 제한은 각 지자체 조례나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규율할 사안으로, 연령 규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